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93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제출자 : 달성군수 

1. 개정이유

사문진 역사공원 내의 폐쇄 시설물에 관한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
건축물 및 그 외 시설물 통합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사문진 역사공원 내 시설물 조항 삭제 및 신설(안 제4조)
- 나. “달성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”로 변경(안 제4조제2항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관광진흥법」 제69조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4. 10. 4. ~ 10. 24.) 결과 : 의견없음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 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 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 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문진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3. 매표소
4. 사문진 계류장
5. 워터스크린분수대

제4조제2항 중 “달성군수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) ①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3. <u>영화기념비, 피아노기념비</u></p> <p>4. <u>사문진 및 강정보 계류장</u></p> <p>5. <u>피아노 광장</u></p> <p>6. <u>진입문(일주문)</u></p> <p>7. <u>소원작성대 및 느림보 우체통</u></p> <p>8. <u>장승 및 조형물</u></p> <p>9. <u>세족대 및 실개천 등</u></p> <p>10. (생략)</p> <p>② <u>달성군수</u>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일반·휴게음식점, 매표소, 기념품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시설) ①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매표소</u></p> <p>4. <u>사문진 계류장</u></p> <p>5. <u>위터스크린분수대</u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<삭제>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관 계 법 령

□ 관광진흥법

제69조(관광지등의 관리)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